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년월일 : 2019. 0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최근 폭풍, 지진,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피해 지역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복구 지원 대책 마련
- 지하수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가 삭제되어 이 조항과 관련된 별지별표 서식 삭제 정비

## 2.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조항에 ‘천재지변’ 추가(안 제21조)
- 조례 삭제에 따른 별지별표 서식 정비
  - 별지별표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5. 1. ~ 2019. 5. 21.) 결과, 의견 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천재지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p> <p>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p> <p>① ----- ----- -----.</p> <p><u>1. 천재지변</u></p> <p>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붙임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 3. 미첨부 사유

- 수입에 대한 감소요인은 있으나 천재지변의 발생 시기 및 빈도, 정도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연락처	(033) 330 - 2340